



IFRS[®]
Sustainability

2025년 4월

공개초안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 대한 개정안
IFRS S2에 대해 제안된 개정안

의견 수렴 기한: 2025년 6월 27일

**Exposure Draft
Amendments to Greenhouse Gas
Emissions Disclosures**

Proposed amendments to IFRS S2

Comments to be received by 27 June 2025

Exposure Draft ISSB/ED/2025/1 is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 for comment only. Comments need to be received by 27 June 2025 and should be submitted by email to commentletters@ifrs.org or online at <https://www.ifrs.org/projects/open-for-comment/>.

All comments will be on the public record and posted on our website at www.ifrs.org unless the respondent requests confidentiality. Such requests will not normally be granted unless supported by a good reason, for example, commercial confidentiality. Please see our website for details on this policy and on how we use your personal data.

Disclaimer: To the extent permitted by applicable law, the ISSB and the Foundation expressly disclaim all liability howsoever arising from this publication or any translation thereof whether in contract, tort or otherwise to any person in respect of any claims or losses of any nature including direct, indirect, incidental or consequential loss, punitive damages, penalties or costs.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does not constitute advice and should not be substituted for the services of an appropriately qualified professional.

© 2025 IFRS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Reproduction and use rights are strictly limited. Please contact the Foundation for further details at permissions@ifrs.org.

Copies of ISSB publications may be ordered from the Foundation by emailing customerservices@ifrs.org or by visiting our shop at <https://shop.ifrs.org>.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Exposure Draft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has not been approved by a review committee appointed by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is copyright of the IFRS Foundation.



The IFRS Foundation has trade marks registered around the world including 'FSA®', the 'Hexagon Device' logo®, 'IAS®', 'IASB®', 'IFRIC®', 'IFRS®', the 'IFRS®' logo, 'IFRS for SMEs®', 'IS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undation®', 'IFRS Foundation®', 'NIIF®', 'SASB®', 'SIC®', 'SICS®', and 'Sustainable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Further details of the IFRS Foundation's trade marks are available from the IFRS Foundation on request.

The Foundation is a not-for-profit corporation under the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Delaware, USA and operates in England and Wales as an overseas company (Company number: FC023235) with its principal office in the Columbus Building,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공개초안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 대한 개정안

IFRS S2 에 대해 제안된 개정안

의견 수렴 기한: 2025년 6월 27일

공개초안 ISSB/ED/2025/1 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오직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의견은 **2025 년 6 월 27 일**까지 접수되어야 하며, 이메일(commentletters@ifrs.org) 또는 웹사이트(<https://www.ifrs.org/projects/open-for-comment>)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견은 공개 기록으로 간주되며, 응답자가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www.ifrs.org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다만, 그러한 요청은 상업적 기밀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용됩니다. 이 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개인 정보 사용 방식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면책(disclaimer): 적용되는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ISSB 및 IFRS 재단(이하, 재단)은 계약, 불법행위 그 외 어떤자에 의한 청구 또는 손해(직접, 간접, 부수적 또는 결과적인 손해, 징벌적 배상, 벌금 또는 비용을 포함)와 관련하여 이 출판물 또는 모든 번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본 출판물에 포함된 정보는 조언이 아니며, 적절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서비스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2025 IFRS Foundation

모든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복제 및 사용 권한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ermissions@ifrs.org 로 재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SSB 출판물 사본은 customerservices@ifrs.org 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https://shop.ifrs.org> 의 온라인 상점을 통해 재단으로부터 주문할 수 있습니다.

본 출판물에 포함된 공개초안의 한국어 번역본은 IFRS 재단이 임명한 검토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번역본에 대한 저작권은 IFRS 재단에 있습니다.



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등록된 상표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IAS®', 'IASB®', IASB® 로고, 'IFRIC®', 'IFRS®', IFRS® 로고, 'IFRS for SMEs®', IFRS for SMEs® 로고,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Hexagon Device', 'NIIF®', 'SIC®' 및 SASB®가 있습니다. 재단 상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요청에 따라 재단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미국 델라웨어 주 일반법인법에 의거한 비영리법인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해외법인(회사 번호: FC023235)으로 활동하며, 본사는 Columbus Building,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에 있습니다.

목차

	<i>페이지</i>
도입	6
의견요청	8
[초안]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개정안	11
2025년 4월에 발행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개정안 공개초안에 대한 ISSB의 승인	19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 대한 개정안의 공개초안 결론도출근거 <i>(별첨 문서 참조)</i>	

ISSB 의 제안 사항

- IN1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특정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요구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완화를 제공하고 기존의 완화 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IFRS S2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한 선별적 개정안을 제안한다.
- IN2 구체적으로, ISSB 는 다음과 관련된 IFRS S2 의 요구사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 (1) 파생상품 및 투자은행업무와 관련된 특정 금융상품(촉진배출량, facilitated emissions), 보험 및 재보험 인수업무(보험관련배출량, insurance-associated emissions)에 연관된 스코프 3 카테고리 15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 및 공시
 - (2) 금융배출량에 대한 정보 공시와 관련된 특정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글로벌산업분류기준(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GICS)의 사용
 - (3) 관할 당국 또는 기업이 상장된 거래소가 기업의 일부에 대해 'GHG 프로토콜 기업회계 및 보고 기준(2004)' 이외의 다른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론의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온실가스 방법론의 사용
 - (4) 보고일에 이용가능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최신 평가에서 제시된 100 년 기준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GWP) 값이 아닌, 관할 당국 또는 기업이 상장된 거래소가 다른 GWP 값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GWP 값의 사용

ISSB 가 이번 공개초안을 발행하는 이유

- IN3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및 IFRS S2 의 이행을 지원하는 것은 ISSB 의 업무 계획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사안이다¹. ISSB 는 기준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다².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행 관련 질의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IFRS S1 및 IFRS S2 에 대한 전환이행그룹(Transition Implementation Group, TIG)을 구성하였다³.
- IN4 ISSB 는 TIG 에 제출된 이해관계자의 질의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도입하거나 사용하는 관할권의 절차를 포함한 ISSB 의 여러 참여 활동을 통해 식별된 적용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였다. ISSB 스태프들은 IFRS S2 의 이행단계에서 확인된 특정 적용상의 어려움을 ISSB 에 회부하여, 이러한 어려움이 추가적인 조치를 요하는지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ISSB 에 회부된 이러한 어려움은 ISSB 가 IFRS S2 공개초안을 재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 IN5 이러한 적용상의 어려움에 대응하여, ISSB 는 IFRS S2 에 대해 특정 개정안을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ISSB 는 이러한 개정안이 기준서의 특정 요구사항을 적용함에 따르는 보고의 복잡성, 중복 위험 및 관련 비용을 줄임으로써 IFRS S2 를 적용하는 기업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IN6 ISSB 는 개정안을 제안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개정안이 IFRS S2 의 특정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완화를 제공하고 기존의 완화 조항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ISSB 는 제안된 모든 개정사항이 선택적 완화를 제공하거나 이에 관련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개정이 기준의 이행에 미칠 혼란의 위험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1) 기업은 이러한 완화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적용하더라도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준수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안전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보고서는 다음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ifrs.org/content/dam/ifrs/project/issb-consultation-on-agenda-priorities/agenda-consultation-feedbackstatement-june-2024.pdf>

2 IFRS S1 및 IFRS S2 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된 교육자료는 다음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ifrs.org/supporting-implementation/supporting-materials-for-ifrs-sustainability-disclosure-standards/>

3 IFRS S1 및 IFRS S2 전환이행그룹(TIG)의 회의는 공개 웹캐스트로 진행된다. 모든 회의의 녹화영상, 안전자료 및 회의 요약은 다음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ifrs.org/groups/tig-ifrs-s1-and-ifrs-s2/#meetings>

- (2) 각국은 이러한 완화 조항을 자국 내 기업에 제공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선택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의 정합성 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안된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

- IN7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는 일반목적재무보고 이용자가 기업의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노출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한다. 제안된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요구사항의 일부 측면과 관련이 있으며, IFRS S2를 적용하는 기업들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일부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다른 기업보다 제안된 개정안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 (1) 금융 부문에 속한 기업은 스코프 3 카테고리 15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요구사항과 관련된 제안된 개정안의 영향을 다른 기업보다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
- (2) 특정 GWP 값 또는 특정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의 사용에 관한 관할권 요구사항을 따르는 기업은, 관할권 관련 완화와 관련된 개정안으로 인해 다른 기업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제안된 개정안의 시행일

- IN8 제안된 개정안은 기업이 IFRS S2를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준서를 이행 중인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SSB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안된 추가적인 완화와 기존 완화에 대한 명확화가 기업에 가급적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ISSB는 개정안의 시행일을 가능한 한 빠르게 설정하고, 조기 적용도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 단계

- IN9 ISSB는 공개초안에 대해 수렴된 피드백을 분석하고 이를 고려하여 후속 절차를 결정할 예정이다. ISSB는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2025년 하반기에 공개초안의 제안된 개정안을 재논의하고, 가능한 한 신속히 개정안을 공표할 계획이다

의견요청

ISSB 는 본 공개초안에 포함된 제안사항에 대해, 특히 아래에 제시된 질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제출된 의견이 가장 유용하다.

- (1) 질의사항에 명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
- (2) 의견이 관련된 공개초안의 문단을 특정할 것
- (3)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것
- (4) 제안된 문구 중 불명확하거나 번역이 어려운 부분을 식별할 것
- (5) 해당되는 경우, ISSB 가 고려해야 하는 대안을 제시할 것

질문

질문 1 – 스코프 3 카테고리 15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 및 공시

ISSB 는 기업이 스코프 3 카테고리 15 온실가스 배출량의 공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 제한은 기업이 IFRS S2 문단 29(1)가③에 따라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공시할 때, 파생상품과 연관된 배출량, 촉진배출량 및 보험관련배출량을 포함한 일부 스코프 3 카테고리 15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하는 것을 허용한다.

- (1) ISSB 는 문단 29A(1)을 신설하여, 기업이 IFRS S2 에서 정의된 금융배출량(즉, 기업이 피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대출 및 투자에 귀속되는 배출량)으로 스코프 3 카테고리 15 온실가스 배출량의 공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 제한을 위하여, 제안된 문단 29A(1)은 기업이 파생상품과 연관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따라서, 이 문단은 기업이 파생상품과 연관된 배출량, 촉진배출량 또는 보험관련배출량을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제안된 개정은 기업이 파생상품과 연관된 배출량, 촉진배출량 또는 보험관련배출량을 공시하고자 선택하는 경우, 이를 공시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문단 BC7–BC24 는 본 개정안을 제안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 제안된 개정안에 동의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2) ISSB 는 또한 문단 29A(2)를 신설하여, 제안된 문단 29A(1)에 따라 스코프 3 카테고리 15 온실가스 배출량의 공시 범위를 제한하는 기업에게, 일반목적재무보고서 이용자가 기업이 제외한 파생상품 및 금융 활동과 관련된 스코프 3 카테고리 15 온실가스 배출량의 규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한다. 이에 따라 ISSB 는 다음 사항을 제안한다.

- 문단 29A(2)①에 따르면, 스코프 3 카테고리 15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 및 공시에서 파생상품을 제외한 기업은, 제외한 파생상품의 수치를 공시해야 한다.

- 문단 29A(2)②에 따르면, 스코프 3 카테고리 15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 및 공시에서 기타 금융 활동을 제외한 기업은, 제외한 해당 금융 활동의 수치를 공시해야 한다.

‘파생상품’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정의된 용어는 아니며, ISSB 는 해당 용어를 정의할 계획이 없다. 따라서 기업은 제안된 문단 29A(1)에 따라 스코프 3 카테고리 15 온실가스 배출량의 공시 범위를 제한함에 있어, 무엇을 파생상품으로 간주할 지 판단해야 한다. 제안된 문단 29A(2)①은 스코프 3 카테고리 15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 및 공시에서 파생상품을 제외한 기업이 제외한 파생상품을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문단 BC7–BC24 는 본 공시 요구사항의 제안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에 동의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2 – 금융배출량 관련 특정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의 사용

IFRS S2 문단 29(1)(가)③ 및 B62–B63 은 상업은행 또는 보험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게 금융배출량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기업은 IFRS S2 문단 B62(1)(가) 및 B63(1)(가)에 따라 금융배출량 정보를 세분화할 때 거래상대방을 분류하기 위해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을 사용해야 한다.

- (1) ISSB 는 IFRS S2 문단 B62(1)(가) 및 B63(1)(가)의 요구사항을 개정하고, 문단 B62A–B62B 및 B63A–B63B 를 추가하여, 특정 상황에서는 기업이 GICS 사용으로부터 완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한다. 제안된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IFRS S2 문단 B62(1)–B62(2) 및 B63(1)–B63(2)에 따라 금융배출량 정보를 세분화할 때, 일정한 상황에서는 대체 산업분류체계를 사용할 수 있다.

문단 BC25–BC38 은 본 개정안을 제안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 제안된 개정안에 동의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2) ISSB 는 또한 문단 B62C 및 B63C 를 추가하여, 기업이 금융배출량 정보를 세분화할 때 사용한 산업분류체계를 공시하도록 하고, GICS 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산업분류체계를 선택한 근거를 설명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한다.

문단 BC25–BC38 은 본 개정안을 제안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 제안된 개정안에 동의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3–GHG 프로토콜 기업 기준 사용에 대한 관할권 완화

ISSB 는 IFRS S2 문단 29(1)(나) 및 B24 를 개정하여,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때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회계 및 보고 기준(2004)’ 외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관할 당국 또는 기업이 상장된 거래소가 요구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관할권 완화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한다. 이 개정은, 해당 관할 당국 또는 거래소의 요구사항이 기업 전체 또는 일부에 적용되는 경우, 이러한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기업이 자사의 일부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때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완화 조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이다.

문단 BC39–BC43 은 본 개정안을 제안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 제안된 개정안에 동의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4–지구온난화지수 값에 대한 관할권 완화의 적용가능성

ISSB 는 IFRS S2 문단 B21–B22 를 개정하여, 기준서에서 허용되는 관할권 완화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ISSB 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때 IFRS S2 문단 B21–B22 에서 요구하는 GWP 값과 다른 값을 사용하도록 관할 당국 또는 기업이 상장된 거래소가 기업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요구하는 경우, 해당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기업은 자사의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해당 관할 당국 또는 거래소가 요구하는 GWP 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문단 BC44–BC49 는 본 개정안을 제안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 제안된 개정안에 동의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5–시행일

ISSB 는 개정안의 시행일을 명시하는 문단 C1A–C1B 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ISSB 는 이 개정안이 기업이 IFRS S2 를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준서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ISSB 는, 개정안이 가능한 한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일을 설정하고, 조기 적용을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문단 BC50–BC51 은 본 제안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질문 5—시행일
이 개정안의 적용시점 설정 방식 및 조기 적용 허용에 대한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6—기타 의견
본 공개초안에 포함된 제안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시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까?

제출기한

ISSB는 2025년 6월 27일까지 수령한 모든 의견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의견 제출 방법

ISSB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전자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설문조사 링크

<https://www.ifrs.org/projects/open-for-comment/>

또는, 다음 방법을 통해 전자적으로 의견서(comment letter)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

<https://www.ifrs.org/projects/open-for-comment/>

이메일 제출

commentletters@ifrs.org

제출하신 의견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공개 기록으로 간주되며, IFRS 재단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기밀 유지를 요청하실 경우, 정당한 사유(예: 영업상 기밀성)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요청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책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FRS 재단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밀 유지를 요청하고자 하시는 경우, 설문조사 응답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commentletters@ifrs.org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초안]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개정안

문단 29(1)(나), 29(1)(바)②, B21-B22, B24, B28, B59, B62(가) 및 B63(가)이 개정된다. 문단 29A, B62A-B62C, B63A-B63C 및 C1A-C1B가 추가된다. 새로 추가된 문장은 밑줄로 표시하고, 삭제된 문장은 취소선으로 표시한다.

핵심 요소

...

지표 및 목표

...

기후 관련 지표

29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산업전반 지표 범주와 관련되는 정보를 공시한다.

(1) 온실가스

(가)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온실가스 절대 총배출량을 이산화탄소환산톤(tonnes of CO₂ equivalent)으로 표시하여, 다음과 같은 분류에 따라 공시한다(문단 B19-B22 참조)

...

③ 스코프 3(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나) 관할 당국 또는 해당 기업이 상장된 거래소로부터 해당 기업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을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것을 요구받지 않는 한,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회계 및 보고 기준(2004)'에 따라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한다(문단 B23-B25 참조)

...

(바) 문단 B32-B57을 참조하여 문단 29(1)(가)③에 따라 공시한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①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 가치사슬(스코프 3) 회계 및 보고 기준(Greenhouse Gas Protocol Corporate Value Chain (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2011)'에서 제시하는 스코프 3 카테고리(Scope 3 Categories)에 따른 기업의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에 포함된 카테고리

② 기업의 활동에 자산운용, 상업은행 또는 보험과 같은 활동이 포함된 경우(문단 B58-B63 참조), 카테고리 15 온실가스 배출량의 일부인 기업의 금융배출량 또는 기업의 투자와 연관된 배출량(금융배출량)에 대한 추가 정보

...

29A 문단 29(1)(가)③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공시를 준비할 때,

(1) 기업은 해당 기업의 스코프 3 카테고리 15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에 포함되는 범위를 금융배출량으로 한정할 수 있다. 금융배출량이란, 기업이 피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대출 및 투자에 기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대출 및 투자'에는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채권, 지분투자, 미인출 대출약정이 포함된다. 자산운용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금융배출량에는 운용자산에 귀속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포함된다. 제한의 목적상, 기업은 파생상품과 관련된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할 수 있다.

(2) 기업은 문단 29A(1)에 따라 제외한 스코프 3 카테고리 15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된 파생상품 및 금융 활동의 규모를 일반목적재무보고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다음을 공시한다.

- (가) 스코프 3 카테고리 15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상, 해당 기업이 파생상품으로 간주한 항목에 대한 설명 및 제외한 파생상품의 수치
- (나) 해당 기업이 제외한 기타 금융 활동의 수치

부록 B

적용지침

문단 B21 – B22 가 개정된다. 새로 추가된 문장은 밑줄로 표시하고, 삭제된 문장은 취소선으로 표시한다. 개정되지 않았으나 참고용으로 포함된 문단은 회색으로 표시한다.

온실가스 (문단 29(1))

온실가스 배출량

...

지구온난화지수 값을 이용한 온실가스의 이산화탄소환산량으로의 통합

- B20 문단 29(1)에 따라 기업은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기업의 온실가스 절대 총배출량을 이산화탄소환산톤으로 표시하여 공시한다. 이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은 일급 가지 온실가스 종류를 이산화탄소환산량으로 통합한다.
- B21 기업이 자신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측정하는 경우, 보고일에 이용가능한 최신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평가의 100 년 기준 지구온난화지수 값을 사용하여 일급 가지 온실가스 종류를 이산화탄소환산량으로 변환한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지수 값을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관할 당국 또는 상장된 거래소가 일급 가지 온실가스 종류를 이산화탄소환산량으로 변환하기 위해 이와 다른 지구온난화지수 값을 사용할 것을 요구받지 않는 한 적용된다. 이와 같이 관할 당국 또는 상장된 거래소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기업은 그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관할 당국 또는 거래소가 요구하는 지구온난화지수 값을 대신 사용할 수 있다.
- B22 기업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하기 위해 배출계수를 사용하는 경우,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의 근거로 기업의 활동을 가장 잘 나타내는 배출계수를 사용한다(문단 B29 참조). 온실가스 종류별 배출계수가 이산화탄소환산량으로 이미 변환이 되어있는 경우, 보고일에 이용가능한 최신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평가의 100 년 기준 지구온난화지수 값을 사용하여 배출계수를 재계산하도록 요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업이 이산화탄소환산량으로 변환되지 않은 배출계수를 사용하는 경우, 기업은 보고일에 이용가능한 최신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평가의 100 년 기준 지구온난화지수 값을 사용한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지수 값을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관할 당국 또는 상장된 거래소가 일급 가지 온실가스 종류를 이산화탄소환산량으로 변환하기 위해 이와 다른 지구온난화지수 값을 사용할 것을 요구받지 않는 한 적용된다. 이와 같이 관할 당국 또는 상장된 거래소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기업은 그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관할 당국 또는 거래소가 요구하는 지구온난화지수 값을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문단 B24 및 B28 이 개정된다. 새로 추가된 문장은 밑줄로 표시하고, 삭제된 문장은 취소선으로 표시한다. 개정되지 않았으나 참고용으로 포함된 문단은 회색으로 표시한다.

온실가스 프로토콜

- B23 문단 29(1)(a)는 기업이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회계 및 보고 기준(2004)'에 따라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여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은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회계 및 보고 기준(2004)'의 요구사항이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한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회계 및 보고 기준(2004)'는 기업이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기업은 문단 29(1)에 따라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해야 한다.

- B24 기업이 관할 당국 또는 자신이 상장된 거래소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을 위해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회계 및 보고 기준(2004)'을 사용한다. 관할 당국 또는 기업이 상장된 거래소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을 위해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른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한다면, 그 요구사항이 기업의 일부에 적용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회계 및 보고 기준(2004)' 대신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측정접근법, 투입변수 및 가정

...

다른 방법 및 측정접근법

- B28 기업이 문단 29(1)(나), B24-B25 또는 C4(1)을 적용하여 다른 방법에 따라 측정한 해당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는 경우, 기업은 각 대체 방법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적용가능한 방법 및 측정접근법
- (2) 기업이 그러한 방법 및 측정접근법을 선택한 이유(들)와 해당 접근법이 문단 27의 공시 목적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문단 B59, B62(가) 및 B63(가)가 개정되며, 문단 B62A-B62C 및 B63A-B63C가 추가된다. 문단 B62(가)② 및 B63(가)②는 각각 문단 B62A(나) 및 B63A(나)로 번호가 변경되어 이동되며, 내용은 수정되지 않는다. 새로 추가된 문장은 밑줄로 표시하고, 삭제된 문장은 취소선으로 표시한다. 개정되지 않았으나 참고용으로 포함된 문단은 회색으로 표시한다.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

금융배출량

...

- B59 문단 29(1)(가)③에 따라 기업은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기업의 스코프 3 온실가스 절대 총배출량(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배출량 포함)을 공시한다. 다음 금융 활동 중 한 가지 이상에 참여하는 기업은 추가로 금융배출량(카테고리 15 온실가스 배출량의 일부) 또는 '금융배출량'으로 알려진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배출량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공시한다.

- (1) 자산운용(문단 B61 참조)
- (2) 상업은행(문단 B62 참조)
- (3) 보험(문단 B63 참조)

...

상업은행

- B62 상업은행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각 산업에 대하여 자산군별로 스코프 1, 스코프 2 및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세분화된 절대 총금융배출량. 이 정보를다음의 기준으로 세분화한다.

- (가) [삭제] 산업-거래상대방을 분류하기 위해 보고일에 이용가능한 최신의 분류 시스템을 반영한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의 6 자리 산업코드를 이용한다.
- (나) [삭제] 자산군-공시에는 대여, 프로젝트 파이낸스, 채권, 자본 투자 및 미인출 대출 약정을 포함한다. 기업이 다른 자산군에 대한 금융배출량을 계산하고 공시하는 경우, 그러한 추가적인 자산군의 포함이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 (2) 각 산업에 대하여 자산군별로 다음에 대한 기업의 총익스포저(재무제표 표시통화로 표시)
 - (가) 조달 금액 - IFRS 회계기준 또는 다른 GAAP 중 어느 것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총익스포저는 조달 장부금액(손실충당금이 있다면, 차감 전 금액)으로 계산한다.
 - (나) 미인출 대출 약정 - 기업은 대출 약정 중 인출된 부분과 별도로 약정 전체금액을 공시한다.

...

B62A 문단 B62(1)~B62(2)에 따라 공시된 정보를 세분화하는 경우,

- (1) 산업 - 기업은 문단 B62B 에 따라 산업분류체계를 사용하여 거래상대방을 분류한다.
- (2) 자산군 - 공시에 대여, 채권, 자본 투자 및 미인출 대출 약정을 포함한다. 기업이 다른 자산군에 대한 금융배출량을 계산하고 공시하는 경우, 그러한 추가적인 자산군의 포함이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B62B 산업별로 세분화할 때, 기업은 다음 순서에 따라 산업분류체계 중 하나를 사용하여 거래상대방을 분류한다.

- (1) 보고일 현재 기업의 어느 부분이라도 대출 또는 투자 활동을 분류하기 위해 글로벌산업분류기준(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GICS)를 사용하는 경우, 보고일에 이용가능한 최신 버전의 분류시스템을 반영하는 GICS 6 자리 산업 수준 코드를 사용한다.
- (2) (1)이 적용되지 않고, 기업 또는 기업의 일부가 관할 당국 또는 해당 기업이 상장된 거래소의 요구에 따라, 보고일 현재 대출 또는 투자 활동을 분류하기 위해 특정 산업분류체계를 사용하여 기후 관련 재무정보를 보고 하는 경우, 해당 산업분류체계를 사용한다. 기업이 둘 이상의 관할권 또는 거래소 요구사항의 적용을 받아 이러한 목적으로 둘 이상의 산업분류체계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산업분류체계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 (3) (1) 및 (2)가 적용되지 않고, 기업 또는 기업의 일부가 관할 당국 또는 해당 기업이 상장된 거래소의 요구에 따라, 보고일 현재 대출 또는 투자 활동을 분류하기 위해 특정 산업분류체계를 사용하여 재무정보를 보고 하는 경우, 해당 산업분류체계를 사용한다. 기업이 둘 이상의 관할권 또는 거래소 요구사항의 적용을 받아 이러한 목적으로 둘 이상의 산업분류체계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산업분류체계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 (d) (1)~(3)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거래상대방을 산업별로 분류할 수 있는 산업분류체계를 사용한다.

B62C 기업은 금융배출량 정보를 세분화하는 데 사용한 산업분류체계를 공시한다. 기업이 해당 목적을 위해 GICS 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산업분류체계를 선택한 근거를 설명한다.

보험

B63 보험 산업과 관련된 금융 활동에 참여한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각 산업에 대하여 자산군별로 스코프 1, 스코프 2,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세분화된 절대 총금융배출량. 이 정보를다음의 기준으로 세분화한다
 - (가) [삭제] 산업-거래상대방을 분류하기 위해 보고일에 이용가능한 최신의 분류 시스템을 반영한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의 6 자리 산업코드를 이용한다.
 - (나) [삭제] 자산군-공시에는 대여, 프로젝트 파이낸스, 채권, 자본 투자 및 미인출 대출 약정을 포함한다. 기업이 다른 자산군에 대한 금융배출량을 계산하고 공시하는 경우, 그러한 추가적인 자산군의 포함이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 (2) 각 산업에 대하여 자산군별로 다음에 대한 총익스포저(재무제표 표시통화로 표시)
- (가) 조달 금액 - IFRS 회계기준 또는 다른 GAAP 중 어느 것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총익스포저는 조달 장부금액(손실충당금이 있다면, 차감 전 금액)으로 계산한다.
- (나) 미인출 대출 약정 - 기업은 대출 약정 중 인출된 부분과 별도로 약정 전체금액을 공시한다.

...

B63A 문단 B63(1)~B63(2)에 따라 공시된 정보를 세분화하는 경우,

- (1) 산업 - 거래상대방을 문단 B63B 에 따라 산업분류체계를 사용한다.
- (2) 자산군 - 공시에는 대여, 채권, 지분 투자 및 미인출 대출 약정을 포함한다. 기업이 다른 자산군에 대한 금융배출량을 계산하고 공시하는 경우, 그러한 추가적인 자산군의 포함이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B63B 산업 기준으로 세분화하는 경우, 기업은 다음의 산업분류체계 중 하나를 순서에 따라 사용하여 거래상대방을 분류한다.

- (1) 보고일 현재 기업의 어느 부분이라도 대출 또는 투자 활동을 분류하기 위해 글로벌산업분류기준(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GICS)를 사용하는 경우, 보고일에 이용가능한 최신 버전의 분류시스템을 반영하는 GICS 6 자리 산업 수준 코드를 사용한다.
- (2) (1)이 적용되지 않고, 기업 또는 기업의 일부가 관할 당국 또는 해당 기업이 상장된 거래소의 요구에 따라, 보고일 현재 대출 또는 투자 활동을 분류하기 위해 특정 산업분류체계를 사용하여 기후 관련 재무정보를 보고하는 경우, 해당 산업분류체계를 사용한다. 기업이 둘 이상의 관할권 또는 거래소 요구사항의 적용을 받아 이러한 목적으로 둘 이상의 산업분류체계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산업분류체계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 (3) (1) 및 (2)가 적용되지 않고, 기업 또는 기업의 일부가 관할 당국 또는 해당 기업이 상장된 거래소의 요구에 따라, 보고일 현재 대출 또는 투자 활동을 분류하기 위해 특정 산업분류체계를 사용하여 재무정보를 보고하는 경우, 해당 산업분류체계를 사용한다. 기업이 둘 이상의 관할권 또는 거래소 요구사항의 적용을 받아 이러한 목적으로 둘 이상의 산업분류체계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산업분류체계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 (4) (1)~(3)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거래상대방을 산업별로 분류할 수 있는 산업분류체계를 사용한다.

B63C 기업은 금융배출량 정보를 세분화하는 데 사용한 산업분류체계를 공시한다. 기업이 이 목적을 위해 GICS 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산업분류체계를 선택한 근거를 설명한다.

부록 C

시행일 및 경과규정

문단 C1A 및 C1B가 개정된다. 새로 추가된 문장은 밑줄로 표시한다.

시행일

...

C1A [월, 연도]에 공표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 대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문단 29(1)(나), 29(1)(파)②, B21-B22, B24, B28, B59, B62(가) 및 B63(가)을 개정하였다.

(2) 문단 29A, B62A-B62C, B63A-B63C 및 C1A-C1B가 추가되었다.

C1B 기업은 문단 C1A에 열거된 개정사항을 [일, 월, 연도]부터 시작하는 연차 보고기간에 적용한다.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기업이 이 개정사항을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한다.

SASB 기준에 대한 후속 개정사항

표 A1 은 개정이 제안된 IFRS S2 문단을 참조하는 SASB 기준을 나열한 것이다. 해당 SASB 기준의 세부 프로토콜에서 IFRS S2 에 대한 참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ISSB 는 IFRS S2 의 개정 사항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이러한 SASB 기준에 필요한 후속 개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표 A1—SASB 기준에 대한 후속 개정사항

개정 유형	SASB 기준	공시 주제
SASB 기준에 포함된 세부 프로토콜 내 IFRS S2 의 특정 문단에 대한 참조 업데이트	자산운용 및 수탁활동	금융배출량
	상업은행	금융배출량
	보험	금융배출량

2025년 4월에 발행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개정안’ 공개초안에 대한 ISSB의 승인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개정안’ 공개초안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위원 14인 전원의 승인 하에 공표되었습니다.

Emmanuel Faber	위원장
Jingdong Hua	부위원장
Suzanne Lloyd	부위원장
Richard Barker	
Jenny Bofinger-Schuster	
Verity Chegar	
Jeffrey Hales	
Michael Jantzi	
Hiroshi Komori	
Bing Leng	
Ndidi Nnoli-Edozien	
Tae-Young Paik	
Veronika Pountcheva	
Elizabeth Seeger	



IFRS[®]

Foundation

Columbus Building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K

Tel **+44 (0) 20 7246 6410**

Email **customerservices@ifrs.org**

ifrs.org

The IFRS Foundation has trade marks registered around the world, including 'FSA[®]', 'IASB[®]',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SSB[®]', and 'SASB[®]'. For a full list of our registered trade marks, visit www.ifrs.org.